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79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1.

발 의 자:이성권・박정하・조승환

우재준 • 주진우 • 박정훈

이종욱 · 최은석 · 강승규

고동진 · 강대식 · 김종양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음. 또한,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,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고 현실성 없는 지정요건으로인하여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,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, 부지 면적 산정 시

국가로부터 점용·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항제1호 중 "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 중"을 "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

을 위하여"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 중 "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"을 "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지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의"로 하고, 같은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부지 면적에는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나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 동의를 받 은 국유지를 포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혅 행 아 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 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 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다. 1. -----<u>국가적</u> 기념 1. 국가도시공원: 제19조에 따 라 설치・관리하는 도시공원 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사 · 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 을 위하여----2. • 3. (생략) 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2(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제25조의2(국가도시공원의 지정 •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) •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① -----관계 부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처 협의를 거쳐 부지 면적이 2 00만제곱미터 이상의-----역사 · 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 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 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 경우 부지 면적에는 해당 도시 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 가 국가로부터 「국유재산법」 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나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 다. <후단 신설>

	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
	의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를
	포함할 수 있다.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